

# 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

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’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2006. 12.29일자로 공포·시행되었습니다

이 중 설비건설업과 관련한 내용을 발췌하여 게재하오니 회원사 여러분의 많은 참고를 바랍니다.

## I. 국가계약법시행령

### 1. 소액수의계약 대상금액 상향조정 (§26)

현행	개정
· 일반건설공사 : 1억원이하	· 일반건설공사 : 2억원이하
· 전문건설공사 : 7천만원이하	· 전문건설공사 : 1억원이하
· 전기공사 등 : 5천만원이하	· 전기공사 등 : 8천만원이하
· 물품·용역 : 3천만원이하	· 물품·용역 : 5천만원이하

#### 〈개정사유〉

- '98년 마지막으로 조정된 소액수의계약 대상금액을 그 동안의 물가상승률, 지방소재 중소기업의 영업사정 등을 종합 고려하여 상향조정

※ '06.8.29 당정협의 결정사항

### 2. 소액수의계약 견적서 제출방법·대상자 관련 개선 (§30)

현행	개정
〈신설〉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2천만원이상의 소액수의계약인 경우 정보처리장치(G2B)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견적 제출안내 후 동 장치를 통하여 견적서를 제출토록 함</li> <li>○ 견적서 제출자를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제한 기준은 재경부령으로 정함</li> <li>○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한 견적서의 제출과 관련한 기준 및 세부절차, 안내공고의 시기 및 기간 등은 재경부장관이 정함 (정부입찰·계약집행기준)</li> </ul>

〈개정사유〉

- 소액수의계약 전적제출대상을 **현장이 소재하는 지역소재 업체로 제한**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기준은 재경부령\*으로 정함

\* 현장이 소재하는 특별시·광역시 또는 도의 관할 구역 안에 소재한 업체로 제한. 다만, 참가자격을 갖춘 자가 5인이상인 시·군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시·군소재업체로 제한가능(규칙 제33조제3항)

- ※ 현재 50억원미만공사는 지역제한경쟁입찰 대상임
- ※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지방계약법령에 의거 시·군 업체로 제한가능
- 견적제출안내 및 견적제출은 **G2B를 활용**토록 하여 투명성 강화
- 견적서 제출자의 재무상태, 건설업 등록요건(예 : 기술자 등) 구비여부를 확인에 관한 사항을 재경부장관이 세부적으로 정하도록 하여 Paper Company 설립 방지
- ※ '06.8.29 당정협의 결정사항

3. 대금지급기한 단축 (§58)

현행	개정
○ 계약상대자의 청구후 14일이내 지급	○ 7일이내 지급으로 단축

〈개정사유〉

- 중소기업 자금회전 원활화 도모(중기특위 및 조달청 등 건의반영)
- 7일기간 계산시 공휴일 및 관계법령에 따른 발주기관 휴무일은 제외(방위사업청등 발주기관의견 반영)

※ '06.8.29 당정협의 결정사항

4. 물가변동제도 개선(§64)

현행	개정
〈신설〉	○ 단품슬라이딩제도 도입 : 특정(규격별)자재의 가격이 15%이상 증감하는 경우 동자재의 가격만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함

〈개정사유〉

- 특정자재의 가격 급등락시(15%이상) 많은 피해가 예상되는 원도급업체 특히, 특정자재를 납품 설치하는 하도급업체 보호를 위하여 개별적으로 물가변동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함
- ※ 중소기업보호 방안마련을 위한 경제정책조정회의 의결사항
- ※ 10%이상 증감하는 경우로 입법예고 하였으나 10%로 정하는 경우 빈번한 조정으로 업무효율성이 극히 저하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어 15%이상으로 조정

5. 지역의무공동도급 대상금액 상향조정(§72)

현행	개정
○ 50억원미만 공사에 대하여 적용	○ 고시금액미만 공사로 상향조정

〈개정사유〉

- 지역중소건설업체의 공사수주 확대를 위하여 개방대상금액 범위 내에서 상향조정
- \* 매 2년마다 국제입찰 대상금액을 원화로 환산하여 고시하며, '07~'08간 적용될 금액은 '06년 말에 변경하여 고시할 예정(원화강세 요인으로 75억원 내외 전망)

※ '06.8.29 당정협의 결정사항

6. 부정당업자제재 사유(입찰불참) 적용범위 일부조정(§76)

현행	개정
○ 입찰등록후 당해회계년도에 3회이상 불참자에 대하여 부정당업자제재조치	○ 전자입찰에 의하는 경우에는 제재대상에서 제외

〈개정사유〉

- 전자입찰의 경우 시스템 작동미숙 등에 따른 불참 등 과실에 의한 불참의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제재조치는 과중
- \* 규제개혁기획단 (엔지니어링분야)의 개선요구 사항 반영

7. 턴키·대안입찰 적격자 선정범위 조정(§86, §87)

현행	개정
○ 적격으로 통지된 턴키·대안입찰자 중 설계점수가 높은 순으로 4개업체 선정	○ 6개업체로 확대

〈개정사유〉

- 턴키, 대안입찰 활성화를 위하여 1차선정 경쟁자 폭을 확대
- \* 건설산업규제합리화 관련 규제개혁단 권고사항

II. 국가계약법시행규칙

1.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의 대상공사 조정(§23)

현행	개정
○ 교량등 22개종류의 공사에 대하여 입찰 참가자격사전심사 실시	○ 기술이 일반화된 상수도 공사등 4개공사를 제외 - 상수도건설공사, 하수도 건설공사, 공용청사건설공사, 공동주택건설공사

〈개정사유〉

- 중소건설업체의 입찰참여 범위가 확대를 위하여 공사기술의 발전 등을 고려하여 PQ 대상공사의 범위를 조정
- ※ '06.8.29 당정협의 결정사항
- ※ 제외 공사별 검토내용
  - '상수도' 및 '하수도' 공종
    - 터파기공사와 관을 부설 접합시키는 공사로 단순 시공위주의 공사이며, 특히 하수도공사의 경우 단순한 Box형 구조물을 설치하는 공사
    - '공용청사' 및 '공동주택' 공종
      - 기술수준이 표준화되어 있고 민간의 사무용 건축물 및 아파트 건축공사가 일반화되어 있어 기술적으로 보편화된 공종
  - ※ 당초 관계부처 의견조회 및 입법예고시에는 하수처리장공사가 포함되어 있었으나 환경부의 의견이 있어 이를 반영 하수처리장공사는 현행유지